

장애인 복지 관련법령의 변천과 문제점

이 성 봉 (천안대학교 교수 / 특수교육학)

이 인 영 (천안대학교 교수 / 법학)

- I. 서설
- II. 장애인복지 관련법령의 연혁
 - 1. 개관
 - 2. 장애인복지 기본법령의 제정
 - 3. 특수교육진흥법의 제·개정과정
 - 4. 장애인고용 관련법령의 변천
 - 5. 편의증진 보장법령의 변천
- III. 현행 법령의 내용과 문제점
 - 1.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문제점
- IV.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 2. 장애인 이동권의 확보
- V. 결론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take a look at the enactment, amendment and others changes on the laws regarding the welfare of the disabled and the alternatives plans for the improvement. Particular attention will be given to the four particular laws, such as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Act,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rsons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of Convenience of the Disabled Persons, Seniors, Pregnant Women and Others.

Prior to 1980s when the first basic law related to the welfare of the disabled, the Welfare of Physical and Mental Disabled Persons Act, was enacted, the laws related to the welfare of the disabled in Korea were scatters on some provisions of individual laws subject mostly for the general public, and the social view on the disabled was simply a sympathetic and benevolent purpose only. The Welfare of Physical and Mental Disabled Persons Act also had many temporary and declaratory provisions and did not have the concrete provisions on the Enforcement Decree either.

Thereafter, in 1990, the laws related to the welfare of the disabled that were designed for the practical contribution of the disabled, including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the Promotion of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Act and others, were enacted or fully revised that the history of the welfare of the disabled in Korea was able to make the stride. The view on the disabled in the community has made a significant turnaround as well. In the later part of 1990s, many issues on the disabled ranging from convenience facilities, right of movement, unemployment and others were raised with the organizations of disabled leading the way. Such legislative demands have been fruitful through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on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rsons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of Convenience of the Disabled Persons, Seniors, Pregnant Women and Others.

However, for the ultimate target of the welfare of the disabled, 'true social integration' with the non-disabled persons or the 'complete social participation and realization of equality' of the disabled, we have to accept the disabled persons as our neighbors. In this aspect, our point of view toward the disabled has to make a stride from building up the welfare environment. We have to approach the issue on the level of the human rights that the disabled has the personal right and right to life as a constituent of 'all people' under the Constitution. The disabled shall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s the subject of the social life. For this purpose, we need to enact comprehensive law for banning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nd have to emphasize the guaranty of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isabled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right to movement and the like.

KeyWords : Welfare, Vocational Rehabilitation, Convenience of Disabled persons

I. 서 설

기독교세계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셨으므로 인간들은 누구나 평등하고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여러 영역에서 아무런 장애와 차별 없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장애인의 생활환경, 교육환경, 취업환경 등을 개선·증진함으로써 장애인이 비록 심신의 장애는 있다 하더라도 능력 발휘에는 장애가 없는 사회환경이 되게 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동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장애인 복지란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법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제도란 외적·양적으로는 한 나라의 법적 체계와 관계되고 내적·질적으로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수준 내지 법적 이념과 연결되며, 특히 사회복지법제가 한 국가의 성숙도와 직결된다고 볼 때 사회복지의 핵심영역인 장애인복지는 이에 대한 척도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제도는 한마디로 선진외국에 비하면 그 역사가 일천하다. 그동안 성장을 우선시한 정책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은 성장가도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여겼거나 아니면 주목하려는 관심이나 여건이 부족하였을 것이다.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장애인복지법 제3조). 복지이념과 실정법 제도가 명실상부하게 동반관계를 이룰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적 통합이 실현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장애인복지 관련법령 중 4대 특별법인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의 제정·개정 등 변천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본이념에 충실한 장애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일조가 되고자 한다.

II. 장애인복지 관련법령의 연혁

1. 개관

1980년대 이전만하더라도 장애인관련 법령은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외하고는 단일법령이 전무하였고 생활보호법¹⁾, 연금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교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1) 1961년 12월 31일에 법률 제913호로 제정된 이 법은 1982년 전면개정 되었다가 1999년 9월 7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었다.

등에서 산발적인 관련규정을 두고 있었을 뿐이었다. 아직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사회인식이 조성되지 못했던 것이다. 1980년대 이전에는 장애인을 불구자로 파악하고 단지 시혜와 자선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사회로부터 차별하고 소외 내지 격리시키는 등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한 시대였다.

1976년 가을 UN 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 : I. Y. D. P.)로 선포하자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한국은 1981년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하고 IYDP 한국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 교육 및 직업재활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발표하였으며, 4월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했다. 1981년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복지 관련 기본법인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 공포되고 이 법에 따라 신설된 당시 보건사회부 산하 재활과에 의해 정부차원의 장애인복지 행정체계가 출범하였다.

장애인고용정책도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원호장애인과 산재장애인을 주된 대상으로 한 시혜적인 성격을 가졌으나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일반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증진정책으로 전환하게 되고 다시 1999년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또한 1997년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이동약자에 대한 접근권의 보장에 노력하였다. 1990년대는 장애인 복지가 여러 면에서 변화하고 급성장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는 한국 장애인복지 50주년²⁾을 맞아 그 간의 노력을 집약하여 결실을 이루고 정착시켜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1989년에 처음으로 장애인복지발전 10개년 계획(1989-1998)을 수립하였고 1997년 이후에는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200년에 수립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이 시행중에 있다.

2. 장애인복지 기본법령의 제정

세계장애자의 해인 1981년 6월 5일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복지관련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법률 제3452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대부분의 조항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규정의 형식을 취하거나 “노력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성격이 강하였고 비록 일부 규정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등의 표현으로 의무규정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더라도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아 사실상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였다.³⁾ 동법이 복지이념을 충실히 담보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법이었지만 제3조에서 “심신장애자는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권보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으며,⁴⁾ 또한 이 법의 제

2) 한국장애인복지 50주년은 1950년대 한국장애인복지의 태동기에 한국불구자복지협회가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1954년 9월 20일을 기점으로 계산한 것이다. 차홍봉, 한국장애인복지50년의 평가와 새로운 도전, 『한국장애인복지50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04.10., 18쪽.

3) 이런 점에서 우주형 교수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세계장애인의 해’라는 국제적인 슬로건에 호응하여 하지 못해 구색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 의미의 장식적인 대외선전용 법에 불과하였다”고 혹평하고 있으며 (우주형, 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성격, 『중앙법학』 제2호, 490쪽), 박석돈 교수는 “우리 정부는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아 장애인들을 위한 기본법마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진국대열의 문턱에서 있다는 자부심에 손상이 갈까 부랴부랴 법을 제정했지만, 국가제정 형편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시책은 뒤로 미루고 우선 형식만 갖추었다고 하겠다”라고 평하고 있다 (박석돈, 『사회복지서비스법』, 서울 : 삼영사, 1999, 430쪽).

정으로 장애인이 법률상 권리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되고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장차 장애인 복지를 발전시켜 나갈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평가가 주어지고 있다.⁵⁾

1988년 10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장애자올림픽대회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무렵부터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9호로 종전법의 명칭과 내용을 전면개정한 ‘장애인복지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은 종전의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바꾸고(법 제2조) 장애인복지사항에 대한 심의기관으로 당시 보건사회부 산하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법 제6조) 장애인등록제를 신설하였다(법 제8조). 장애인복지법은 현재까지 10차 개정이 있었으며 1999년 3월 31일 전문개정시 정신장애인을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법 제2조 제2항) 제3조에서 기본이념규정을 신설하였다.

3. 특수교육진흥법의 제·개정과정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아동 교육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1962년 한국특수교육협회가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과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법의 제정을 주장한 지 16년만인 1977년 12월31일 법률 제3053호로 제정되어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⁶⁾ 2004년 현재까지 7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1994년 1월 7일 3차 개정시 전면개정이 이루어져 ‘장애아동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무상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도록 하는 등’ 당시 급증하고 있던 특수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조기교육과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 시키는 각종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 개정법의 특징은 제15조에서 통합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⁷⁾ 당시 통합교육⁸⁾은 선진외국의 특수교육의 모델로서 부각되었는데 이 점에서 개정법은 한층 더 특수교육 진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⁹⁾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일반학급에의 배치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으나

-
- 4) 남상만, 장애자복지의 이념과 우리나라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성격, 『사회복지연구』 제13권, 1985, 67-78쪽.
 - 5) 우주형, 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성격, 『중앙법학』 제2호, 489쪽.
 - 6) 1970년대는 초반부터 대학입시철만 되면 신체장애를 이유로 학교당국이 입학할 것을 거부하는 사태로 사회적으로 물의가 빚어져 학부모들과 장애인단체들이 해당 학교와 행정당국에 항의하는 경우가 잦은 것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사회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주창식, 장애자복지의 법적 고찰,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1993, 18-19쪽 참조.
 - 7) 제15조 (통합교육) 제1항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8)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6호).
 - 9) 당시 일본은 한국의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고 한다. “한국의 특수교육이 일본 특수 교육의 역사와 같은 진척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통합교육이란 세계의 흐름을 과감히 타고 있다. 이제 한국의 최근 변화를 일본 특수교육을 움직이게 하는 자극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특수교육진흥법은 아시아 지역에서 호주와 버금가는 선진된 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원경, 『특수교육법 신론』,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2001, 99쪽 참조.

아직도 일반학급에서의 특수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장애발생 예방과 특수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영유아기에 조기 특수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진외국과 달리 아직 법제상 관련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¹⁰⁾

4. 장애인고용 관련법령의 변천

장애인 복지의 최종 목표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에 있으므로 장애인들이 노동을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고용정책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주된 내용을 이룬다. 1982년 4월 3일 종래의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신체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부당한 취업제한을 금지하는 조항을 둔 바 있으나 장애인의 취업보장에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1990년 1월 13일 장애인 고용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법률 제4219호)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66호로 전면개정되어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란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동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하여야 하며(법 제23조),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한다고 규정하였다(법 제36조).

그리고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되(법 제24조 제1항, 영 제23조 제1항)¹¹⁾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법 제27조), 또한 기준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법 제26조). 공단운영, 부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등을 위하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다(법 제59조).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도 법적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5. 편의증진 보장법령의 변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처음으로 편의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1990년 장애인복지법의 시행 이후 편의시설 설치규정이 강화되었으며 당시 이 법에 근거하여 1999년 12월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완하여 1997년 4월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약칭 ‘편의증진

10) 특수교육대상아동들을 장애발생 초기부터 특수교육하면 1차 장애가 현저히 감소하고 2차 장애도 예방되어 통합교육이 용이해지고 장애의 특수교육비용도 많이 절감된다고 한다. 정정진, 장애인교육, 『한국장애인복지 50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2004, 196쪽.

11) 이 조항은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07154호에서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개정되어 의무고용사업주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편의증진의 대상을 장애인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노인과 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이동약자로 확대하여 이들의 이동과 접근권을 권리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이 법률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애의 벽을 없애고 ‘무장애 공간’(Barrier Free)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¹²⁾

그러나 이 법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범주 내에서 이동관련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구체적인 실효성이 선진외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그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구체화 확보방안으로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보행환경 조성,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확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안)”을 마련하여 현재 국회에 상정 중에 있다.¹³⁾

III. 현행 법령의 내용과 문제점

1.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장애인의 범주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에서는 “심신장애자”를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정의하였고, 1989년 전문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동법은 장애인을 크게 ①지체장애 ②시각장애 ③청각장애 ④언어장애 ⑤정신지체라는 5가지 유형으로 한정하였고 이러한 개념정의는 1999년 개정법률시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장애인범주를 좁게 인정함에 따라 신장·심장기능장애 등 내부기관의 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왜소증, 정신장애 등을 가진 자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다.¹⁴⁾ 이에 1999년의 개정 법률에서는 제2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정의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그 구체적인 장애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¹⁵⁾ 이에 따라 개정된 동법 시행령은 장애인의

12) 박을중, 접근권, 『한국장애인복지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04, 142쪽.

13) 박을중, 앞의 글, 149쪽 참조.

14) 김용득·김진우, 장애인복지의 변천과 전망, 『사회복지연구』 제14호, 1999. 겨울, 75쪽.

15) 제2조 (장애인의 정의) ①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류를 종전의 5가지에다 다시 5가지를 추가하여 모두 10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¹⁶⁾ 이는 장애인의 범주를 확대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의 범주를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비하면 여전히 그 범위가 좁으므로 계속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¹⁷⁾ 정부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국가 재정부담 및 장애정도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장애범주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으로 있다.

(2) 신규 장애인복지법의 차이점

1989년 구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서 보건사회부내에 둔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1999년 개정법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두고(제11조) 종전의 단순한 심의·건의기능을 벗어나 장애인복지종합정책을 수립하고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고 정책이행을 감독·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종전 법 시행령(제36조)에서 규정된 장애인의 날과 장애주간을 개정법률(제12조)에서는 직접 명시하였다. 신법은 제3조에서 기본이념을 신설하고 장애인모욕등금지(제8조 제2항)를 명문화하였다.

개정법은 제2장(기본시책의 강구) 제16조, 제17조에서는 장애인의 생활기능을 습득·회복하기 위한 재활의료를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을 예시하며 구체화하고, 종전 보장구라고 부르던 장애보완기구 명칭을 재활보조기구로, 기능회복훈련을 사회적응훈련으로 명명하였다.

무엇보다도 1999년 개정법에서 특기할만한 부분은 제19조의 '직업재활'에 관한 규정이다. 구법(제13조)이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의 실시 기타 필요한 시책'이라고 규정하던 소극적인 태도를 지양하여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후지도 등'이라는 구체적이고도 능동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당시 직업재활법 제정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였다. 나아가 제20조(정보에의 접근), 제22조(안전대책의 강구), 제23조(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제26조(복지연구, 복지·체육진흥)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중 특히 제23조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3장 복지조치 부분에서는 제30조에서 종래의 장애인복지지도원을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개칭하고 시행령 제17조에서 고졸학력 관련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제32조(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 등), 제35조(장애인사용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6조(장애인보조건의 훈련보급지원등)을 신설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등 수당관련규정(제44조, 제45조)도 신설하였다. 또한 구법 제46조의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신법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로 개칭하고 단체의 주된 성격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있음을 명시하였다. 더욱이 제5장(재활보조기구)과 제6장(장애인복지전문인력)을 신설하여 관련내용을 세목별로 구체화 하였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16)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에 해당하는 ①지체장애 ②뇌변병장애 ③시각장애 ④청각장애 ⑤언어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인 ⑥신장장애 ⑦심장장애로 나누어지고, 정신적 장애는 ⑧정신지체 ⑨ 정신장애 ⑩발달장애(자폐증)로 분류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참조.

17)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구는 145만 명으로 인구 100명당 장애인구비율은 3.1%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수치는 1995년 장애인구비율 2.5%에 비하면 증가하였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고 있는 전체 인구의 10%라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문제점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약칭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장애인의 취업을 제한적으로나마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독립된 생활권의 확보와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제정당시 상시 고용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를 핵심내용으로 도입하였지만, 2001년 상반기에 발표된 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실태 결과에 의하면 중앙부처,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84 개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1.48%, 65개 공기업의 고용비율은 1.91%, 65개 공기업 가운데 27개 공기업은 장애인 고용비율이 1%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고,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인 1,891개 기업의 고용비율은 0.95%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의무고용 대상 기업의 19.3% 인 395개 기업은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⁸⁾

이는 의무고용 대상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노무관리상의 애로 및 추가비용부담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직접 고용을 기피하고 오히려 의무불이행시의 장애인고용 부담금 납부를 선호한 결과로 여겨진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보호고용 규정이 없고 일반고용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경증장애인 위주의 고용정책이며,¹⁹⁾ 또한 직업재활이란 거시적 관점에서 장애인고용정책을 규정하지 않고 가시적 성과 위주의 고용촉진 및 고용알선에 비중을 둠으로써 취업이후에도 높은 이직률을 보였으며 집행체계에 있어서도 장애인 고용 및 취업알선은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직업재활은 보건복지부와 복지서비스시설 등으로 분리된 이중적인 체계로 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받아왔다.²⁰⁾

위와 같이 종래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여러 입법상 하자로 말미암아 제정 이후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개정요구가 있었고 1997년 말부터는 종래 노동부 소관인 장애인고용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강화할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이 법을 대체하는 장애인직업재활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대두하였다. 결국 직업재활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는 찬반대립 끝에 2000년 1월 12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라는 절충적인 형태로 전면개정되었다.²¹⁾

신구법의 차이점을 보면, 첫째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주로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법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비중을 두고 있다. 둘째 개정법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주무부서를 여전히 노동부로 하되 그 기본계획은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후 수립하게 하고(제6조), 직업재활업무 중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후 적용지도 등의 업무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관장하며(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동법 제11조와 제14조의 직업개발훈련과 직업알선은 노동부 단독소관으로 하는 등 절충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셋째 개정법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효율적으

18) 장애인복지신문, 2001년 7월 30일자.

19) 권도용, 고용촉진법을 통해 본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정책입문』, 서울 : 한국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7, 99쪽.

20) 최무현,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12권 제4호, 2003, 42-43쪽; 유점화, 직업재활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제13집 제2호, 2003, 250쪽.

21) 김용득·김진우, 앞의 글, 주2 ; 최무현, 앞의 글, 33쪽 참조.

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사업을 종전에 비해 대폭 확대하였다(제36조). 넷째 개정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를 분명히하였다.²²⁾ 그리고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2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되 다만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채용비율을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였다(동조 제2항).²³⁾

그러나 법률명칭에서도 보여주는 이러한 절충식 개정은 종전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개정법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 등 직업재활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였지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은 관련규정(영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에서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공고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권한배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정법은 중증장애인 지원과 체계적인 직업재활을 위한 종합적인 장애인고용정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가 크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종전 법과 크게 다를 바 없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중심으로 고용촉진 위주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⁴⁾

IV.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제11조에서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1948년 제3회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그 존엄성과 권리를 갖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선언하였고, 1971년 제26회 UN총회의 정신박약자권리선언 제1조에서는 “정신박약자는 국민으로서 일반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으며, 1975년 제30회 UN총회는 장애인의 권리선언 제3조에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고 결의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이라는 복지의 기본이념은 곧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과 직결된다. 즉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구현은 동일개념에 대한 관점과 표현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본다. 특별히 장애인의 인권이 비장애인에 비해 강조되어지는 것은 그동안 소외된 소수 집단으로서의 그들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존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반성적·회복적인 권익신장이 더욱 요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구현도 곧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오늘날 국제적인 흐름도 장애문제를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권문제로 다루고 있고 세계 각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²⁵⁾

22) 개정 전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었다.

23) 동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은 2004년 1월 29일 “다만, 직종별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2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직종의 공개채용비율은 100분의 5로... (정한다).”로 개정되었다.

24) 최무현, 앞의 글, 58쪽.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1) 장애인복지 관련법의 차별금지규정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처우는 이러한 평등의 이념에 반할 뿐 아니라 완전한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것이다. 1999년에 전문개정된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제8조 제1항에서 차별금지 규정을 독립시키고 개정 전의 구법 제3조²⁶⁾ 제2항과 달리 단순히 장애인의 입장에서의 수동적인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모든 국민에게 차별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2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다.²⁷⁾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정부나 비장애인이 조성해주는 사회적 여건이나 기회의 보장에 피동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애인에게 부여된 능동적인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²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4조 제2항은 “사업주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 제1항에서도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에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차별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 복지관련 개별법상의 차별금지조항들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평등권을 하위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의미는 있으나 이에 따른 벌칙조항들이 없어 실효성 없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에 그치고 있다.²⁹⁾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차별문제가 다소나마 법적인 문제로 부각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

25) 대표적으로 미국은 1990년에 미국장애인법(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영국은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DDA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제정하였고, 독일은 2002년 5월 1일부터 장애인기회균등법(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BGG)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1998년 이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6) 구 장애인복지법 제3조 (개인의 존엄 등) ①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②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

27)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8조 (차별금지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8) 현행법 제4조 (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9) 외국의 경우에는 형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구체적인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례로 프랑스의 형법은 제187-1조에서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개인, 단체, 협회 또는 그 구성원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혜택을 고의로 거부한 경우’에는 ‘2월 이상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 프랑 이상 4천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 장애인복지법이 제3조 제2항에서 장애인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장애인문제를 국가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장애인인권헌장이 제정되었다. 같은 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약칭 ‘민변’)에서 공동으로 장애인종합법을 기초하여 국회에 입법 청원하였다. 당시 장애인종합법의 제정운동 이유는, 장애인의 문제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전제되어야 할 생(生)의 전 영역에 걸쳐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장애인복지가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총체적인 개념형태로 체계화 될 때 그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³⁰⁾ 그러나 이 법안은 법시행부처를 정하지 못한 채 15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폐기되었다. 이후 장애계는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인권법 제정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지만 인권법안이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이 당초 기대보다 약한 국가인권위원회법³¹⁾으로 하향 제정되자 다시 장애계는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³²⁾

최근 장애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의 제정운동을 통해 강조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장애인복지 관련법의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은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며, 규정된 장애인의 인권도 형식적이고 시혜적인 권리에 불과하다. 또한 복지서비스는 장애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 차별의 문제는 기존의 복지관련 법령과 같은 개별적인 단행 법률의 일부규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종합적이고도 광범위한 문제이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은 성별, 연령 등 사회의 일반적인 차별과도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초하고 있는 ‘사회적차별금지법(안)’³³⁾이 포괄하지 못하는 고유한 차별금지영역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그 제정이유로 들고 있다.³⁴⁾

장애인의 복지실현이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함은 사실이지만 장애에서 비롯되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결과론에 불과하며 총체적인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시발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1997년도의 장애인종합법(안)은 총12장 중 2개장에 걸쳐 장애인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장애인 복지관련 개별법령을 분야별로 종합한 이른바 장애인복지종합법(안)의 성격에 머물고 있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상존하고 있는 장애인차별을 적극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입법화 된다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인권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게 하는 사회인식 전환의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30) 권도용, 장애인종합법(통합법) 제정이유, 『장애인종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7.10. 27., 7-14쪽 참조.

31) 국가인권위원회법은 2001년 5월 24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 제 06481호로 제정되었다.

3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법제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자료집』, 2002. 12. 10쪽.

33) 이 법안은 사회의 일반적인 차별영역을 ①남녀(성별) ②비정규직 근로자 ③외국인 근로자 ④장애인 ⑤학벌이라는 5대 영역으로 설정하고 여러 개별법안에 산재되어 있는 이들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3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앞의 책, 1-20쪽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 제정추진을 위한 지역종합공청회 자료집, 2004. 9. 10, 1-13쪽 참조.

2. 장애인 이동권의 확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을 체감하는 분야는 특히 시설과 교통수단의 이용과 장소이동에 관한 것이다. 장애인은 여전히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마음대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처지이다. 앞서 살펴 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예관한법률 제4조는 ‘접근권’이란 표제 하에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모든 시설과 설비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장애인 이동권·정보접근권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라는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할 생존권적 기본권임과 동시에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결국 장애인 이동권·접근권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전제가 된다. 비록 장애인이 능력에 적합한 직장을 알선 받더라도 출퇴근시 이동이 불편하거나 사업장 내의 편의시설이 부족함으로써 접근이 곤란하여 취업을 포기하거나 이동의 제약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할 것이다. 진정한 이동권의 보장은 도로나 교통시설, 건축물 등 이용시 장애인의 이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회적·외적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인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포용하고 함께 공동의 일상생활을 나누려는 의식의 전환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최초의 장애인복지관련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8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관련법령은 대부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단행법률의 일부조항에 편재하고 있었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도 동정과 시혜의 대상에 머물고 있었다. 심신장애자복지법도 임의적인 선언적인 규정이 많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도 않았으며 복지체계가 조직과 예산에 의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였다.

이후 1990년에 이르러서는 장애인에 대해 다소나마 변화되어가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명실공히 장애인복지제도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 관련법령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전면개정됨으로써 한국 장애인복지 변천사에 있어서 본격적인 발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0년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동권, 실업문제 등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이러한 법제상의 발전과정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예관한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결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제도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도 충분히 개선되어 있지 못하다. 장애인을 더 이상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disable person)’으로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different able person)’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실현' 또는 비장애인과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우리와 공존하는 같은 이웃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인식의 전환 없는 제도의 정비는 무의미하거나 그 효과가 반감된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도 복지환경의 조성이나 편견의 해소라는 주변적·귀납적인 측면에서가 아닌 장애인도 헌법상 '모든 국민'의 일원으로서 인격권과 생존권을 가지며 사회생활의 주체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최근 장애인의 차별 금지를 위한 종합법 제정운동이나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주장은 장애인사안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장애인을 우리의 이웃으로 여기고 함께 하려는 기독교적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분출되고 재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웃 사랑을 통하여 비로소 장애인가정들이 복지사회에서 행복을 누리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건강한 가정으로 구현되어 갈 것이다.³⁵⁾



35) 2004년 2월 9일 법률 제07166호로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제21조 제4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권도용, “고용촉진법을 통해 본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정책입문』, 서울 : 한국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7.
- _____, 장애인종합법(통합법) 제정이유, 『장애인종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7.10. 27.
- 김용득·김진우, “장애인복지의 변천과 전망”, 『사회복지연구』 제 14호, 1999. 겨울.
- 김원경, 『특수교육법 신론』,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2001.
- 남상만, “장애자복지의 이념과 우리나라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성격”, 『사회복지연구』 제 13권, 1985.
- 박석돈, 『사회복지서비스법』, 서울 : 삼영사, 1999.
- 박을중, “접근권”, 『한국장애인복지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4.
- 우주형, “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성격”, 『중앙법학』 제 2호.
- 유점화, “직업재활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제 13집 제 2호, 2003.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 제정추진을 위한 지역종합공청회 자료집』, 2004. 9. 10.
- 정정진, “장애인교육”, 『한국장애인복지50년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2004.
- 주창식, “장애인복지의 법적 고찰”,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1993.
- 차홍봉, “한국장애인복지50년의 평가와 새로운 도전”, 『한국장애인복지 50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04.10.
- 최무현,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12권 제4호, 2003. 겨울.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법제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자료집』, 2002. 12.